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오용식 의원의 7인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1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1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 개정(2008. 3. 21, 법률 제8974호)과 건축법시행령 개정(2008. 10. 29, 대통령령 제21098호)으로 법률조문 개정과 건축위원회 인원을 증원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건축위원회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과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함.(안 제4조)
-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률조문 개정(안 제23조, 제25조)
- 건축위원회, 소위원회, 간사 및 서기 등의 인원의 표기방법을 “인” 에서 “명”으로 개정(안 제4조, 제8조, 제11조, 제19조, 제22조)
- 직제개편으로 건축팀을 건축디자인과로 명칭 변경(안 제8조, 제22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개정과 위원회 등의 인원의 표현방법을 적절한 용어로 통일함은 물론, 직제개편에 따른 성과명칭을 변경하고 충청북도 건축위원회의 위촉대상에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